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516629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382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5166290 판결

전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2. B

변론 종결 2016. 5. 27.

판결 선고 2016. 6. 10.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4,62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11.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A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44,624,13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1)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2015. 12. 3.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구상관계

(1) 원고는 2014. 7. 1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43,750,000원, 보증기한을 2015. 7. 1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신한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7. 16. 피고 A에게 일반자금대출금 43,750,000원을 변제기를 2015. 7.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 A은 2014. 8. 15.경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2015. 3. 11. 신한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44,776,350원을 피고 A을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152,220원을 회수하여 위 구상금 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잔액은 44,624,130원(= 44,776,350원 - 152,220원)이다.

(5)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소정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비율은 그 이행일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경과

(1) 피고 A은 2014. 8. 2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4474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36410호로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A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같은 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36104호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44,624,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이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한 사해행위이므로 "44,624,13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A 피고 A은 오래 전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온 피고 B에게 19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고 B의 변제 독촉으로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원고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2) 피고 B 피고 B는 피고 A에게 2012. 7.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300,000,000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고 대부분의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B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44,624,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정한 이율은 그 이행일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44,624,13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3. 11.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이 2014. 8. 15.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기초사실 가.항에서 본 소극재산만 있을 뿐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전혀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사해의사의 추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A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A과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은 피고 A에게 2012. 7.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합계 310,001,230원을 대여하고 피고 A으로부터 원금 중 60,0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대여금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68,0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과 피고 B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기초법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나)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말소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1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16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42,000,000원(= 210,000,000원 - 16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석문

별지

1) "44,624,13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은 "44,624,13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오기(誤記)로 보인다.